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

소관 부처	위임기관	수 임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경찰청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소방청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림청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갖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에 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
4. 「먹는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